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

결 정

등 본 입 니 다
2020. 4. 22.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
법원주사 문주영



사 건 2014고정353 사기 등
피 고 인 한진태 (630222-1644116), 공무원
주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47, 106동 1203호(행신동, 무원마을)
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73-1
변 호 인 변호사 오병주

주 문

이 사건 소송절차는 이 법원 2014. 10. 1. 선고 2014고정353 판결이 2015. 9. 10. 확정
됨으로써 종료되었다.

이 유

1. 사건의 개요

피고인은 2014. 10. 1. 이 법원에서 사기죄, 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
원을 선고받고 2015. 9. 10.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. 피고인은 2020. 4. 3. 위 판결에 각
죄별로 벌금의 액수를 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'추가재판 및 기일지
정신청'을 하였다.

2. 판 단

경합범의 가중에 관한 형법 제38조의 규정,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의 시행일(2015. 12. 24.)에 비추어, 각 죄별로 벌금의 액수를 정한 뒤 이를 합산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 또한, 주문 기재 판결의 재판서에는 명백한 오류가 존재하지도 아니한다.

한편, 이 사건 소송절차는 주문 기재 판결이 2015. 9. 10.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0. 4. 21.

판사 권기백